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

A Study of Leisur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 Kim, Oi-Sook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의 과제 |
| II. 여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V. 맺는말 |
| III. 외국의 여가 정책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leisure policy in Korea and introduce the leisure policy of other countries-particularly, France, America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opose several ideas to improve Korean leisure policy. These ideas include the foundation of leisure act, the arrangement of the leisu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a leisure research institute, increasing leisure time, the extension of leisure space, supplying of leisure programs, supporting to and regulating leisure industries, providing leisure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training leisure specialists.

I. 머리말

인간의 삶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만족감 증대 및 영역간의 조화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단계에서는 문화적·정신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노동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¹⁾의 활용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

1) 여가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크게 시간개념, 활동개념, 주관적·심리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여가를 시간개념으로 보면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한 이후에 남는 자유시간, 즉 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하고

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여가만족도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밝혀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김외숙 외 7인, 1995).

우리사회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1980년대에는 여가가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여가의식 및 여가환경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증대된 여가수요에 대한 여가공급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일탈적 여가행동, 향락·퇴폐업소의 만연에 따른 소비적·향락적 여가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파괴,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여가향유에 있어서의 계층별 차별화의 심화 등 여가생활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김외숙, 1991). 또한 미래사회에는 여가가 더욱 중요한 생활영역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에 더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조사연구에서도 돈을 더 벌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겠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신세대소비자의 여가욕구가 매우 강한 경향을 보인 점(권미화·이기춘, 1995)들에서 여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한층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휴 2일제가 보급된 구미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교양오락비의 증가 그 자체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충분조건

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높아진 여가욕구를 어느 정도의 여가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켜 개인 및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의 향유는 개인으로서도 가능하지만 가족 및 가정이 여가생활의 상대자 및 장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의 연대, 가정생활만족도, 가족안정성 등에 노동의 공유보다 여가의 공유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여가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가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교를 위하여 외국의 여가정책을 개관한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여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여가생활의 다면성으로 인하여 여가정책은 노동정책, 문화정책, 체육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관광정책, 여성정책 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여가정책을 포함시켜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민의 여가생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국민의 여가생활실태 및 대책'을 연구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제까지의 여가정책의 변천과정을 살

남는 잔여시간을 의미한다. 여가에 대한 활동개념이란 여가를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 자체를 여가로 본다. 여가를 주관적·심리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 어떠한 조건이 분명하게 여가상태를 규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가와 비여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지각된 자유(고/저), 동기(내적/외적), 일과의 관계(고/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주관적 의미의 여가란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위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외숙, 1991 참조).

여가정책에서는 국민의 자유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가를 자유시간 또는 잔여시간이라는 시간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여가개념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피해 여가정책을 '자유시간충실정책'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여가를 기본적으로는 시간개념으로 보고, 다만 강조나 구별을 위하여 여가시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로 한다.

펴본 후, 여가관련법률과 여가행정으로 나누어 여가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여가정책의 변천과정

노동정책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여가정책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우주의 경제정책이 진행되어 오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44시간으로 감소됨으로써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 시작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여가생활의 활성화도 문화부문의 일부 과제로 포함되었다.

여가활동의 주요내용에 포함되는 문화, 체육, 관광 중에서 정부가 중시하는 영역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문화활동을 중시해 온 경향이 있고, (구)서독의 경우 체육을 중시해 왔다. 영국에서는 여가정책은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광은 산업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 온 경향이 있었다(Richards,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관광문제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일찍부터 정부가 관심을 가져온 영역이다. 즉 1970년대 들어와 정부는 국고수입의 증대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국내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채의 압박을 줄이고 무역적자 폭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자원을 국내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국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시켰다. 정부의 관광산업에서 기생관광의 활성화는 여성을 성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직장에서의 여성푸대접, 분단현실에서 야기되는 미군의 수요, 남성지배 이데올로기 등이 윤락여성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고(변화순, 1995), 여기에 기업의 점대문화 등이 부가되어 향락·퇴폐업소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향락·퇴폐산업의 번성은 그 동안의 불균형 고도경제성장 정책에서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

을 찾을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조장해 온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일반국민의 여가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향락·퇴폐산업의 번성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게 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도 건전생활문화 시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 환경녹지국에 건전생활과가 신설되었다. 건전생활과에는 진흥계, 개발계, 시설계가 있었는데 각 부서별 여가관련업무내용을 보면, 진흥계는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사회체육 진흥에 관한 종합조정 및 시행을, 개발계는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여가생활 지도 및 지원, 여가생활지도원의 육성을, 시설계는 여가생활 관련시설(공원과 및 녹지와 관장시설 제외)의 개발계획 수립 및 지도, 체육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레크리에이션·레저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여가생활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내무부에서도 1989년 3월에 사회지도계 전담으로 직할시(건전생활 기획계와 지도계), 도(건전생활계), 시군(새마을과에 건전생활계), 구(총무과에 건전생활계)에 여가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은 곧 개편되어 1989년 후반부터 건전생활 관련부서가 생활체육 관련부서로 변경되었다. 생활체육은 여가활동을 구성하는 한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여가행정전반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여가정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체육의 비중이 높은 점이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했으며 1982년 3월에는 체육부가 발족되고 주요사업 중 1개 분야로 국민여가의식의 개혁이 설정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현재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체육행사의 유치, 일반인보다는 선수육성우주, 프로야구단의 창설 등 체육정책은 독재정치를 위해 대중을 정치참여에서 배제시켜 비정치화하

려는 과정에서 동원된 3S정책(Sex, Screen, Sports)의 하나로서 운동이 탈정치적 오락문화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0년에는 문화부가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여가정책에서 문화부문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이 문화부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었으며, 문화부의 정책이 문화창조자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수용자도 고려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되면서 이 부에서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정부가 문화복지를 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부에 문화복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화복지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국민의 여가향유권 신장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1996).

2. 여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여가관련법률

현재 국민의 여가생활향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가와 관련되는 여가관련 법률은 다수 존재한다. 「사회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제정목적 자체에 국민의 여가생활향상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여가시간과 관련되는 법률로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및 월차·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여가공간과 관련되는 법률로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가활동과 관련되는 법률로는 「사회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공연법」, 「방송법」, 「영

화법」 등 문화예술관련법 등이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참여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되는 법으로 「윤락행위등 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1996년 1월을 기준으로 여가관련 주요법률들을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여가생활과 관련되는 많은 개별법들이 존재하지만 각 법률의 제정목적이 국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여가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기본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여가행정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수준에서 여가와 관련된 업무를 정부조직법 및 행정각부와 그 소속직제에 관한 대통령령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가행정은 주로 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 문화정책실, 관광국, 체육정책국 등)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른 많은 행정부서에서도 자체업무의 연장 또는 기능강화로써 여가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조정은 재정경제원(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에서 맡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장은 여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가행정의 총괄적인 기능을 배려한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여가행정과 특히 관련이 깊은 업무만을 중심으로 상하조직간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여가행정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며, 상하부 조직이 비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활동내용에 따라서는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민의 여가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구청의 직제 및 업무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생활체육과가 여가생활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맡고 있고, 문화공보실, 국민운동지원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표 1〉 여가관련 주요법률

영역	법률	영역	법률
헌법	대한민국헌법	노동	근로기준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지방행정	지방자치법		
치안	미성년자보호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사회교육	사회교육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문화·공보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연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건설	건축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오지개발촉진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주도개발 특별법 하천법
	체육		청소년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농림	산림법		

등 다른 부서들도 여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관련업무를 행하고 있는 각 부서간의 획적 연대나 조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치구에서 여가관련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과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사회체육지도

자가 여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3년 서울시의 22개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체육지도자들 중 전공이 사회체육이 아닌 체육학이나 체육교육학인 경우가 7할을 넘고 있다(최장호·정우식, 1992). 주요업무가 특정경기종목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

〈표 2〉 중앙부처별 여가관련업무

행 정 각 부	여 가 관 련 업 무
국무총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책 심의·조정 • 국민복지 심의·조정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조정
외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학술 및 체육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수립 및 시행 • 국제문화교류, 문화홍보 담당 • 문화관계, 문화관련 기구에 관련된 업무담당
내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총괄 • 자연보호운동의 지원 •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도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시민체육,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담당 • 사회교육체육국 설치운영
문화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의 기본방향정립과 문화복지정책의 심의·자문 • 청소년시설 개발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지도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계획 • 국민의 취미 및 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취미 및 여가생활관련 문화단체의 지도 등 전반적 문화발전 •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 •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관장 • 건전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공체육시설 육성 • 전통문화보존,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의 진흥 • 문화재 보존 • 관광자원 개발·보호 및 관광진흥 및 홍보
환 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사업 • 토양, 대기, 수질보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 담당 •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 동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시설 확충계획 및 시행 • 근로여성복지계획 수립 및 조정 • 근로청소년의 문화활동지원 • 근로여성복지시설운영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교통수단별 수송정책 수립 및 시행

〈표 3〉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여가관련업무 담당조직

주요여가 업무	중 앙 정 부		서 울 시		자 치 구*	
	부	실·국	국	과	실·국	과
체 육	문화체육부	체 육 정 책 국	내 무 국	사회진흥과	총 무 국	생활체육과
문 화	문화체육부	문 화 정 책 실	문화관광국	문 화 과	총 무 국	생활체육과
관 광	문화체육부	관 광 국	문화관광국	관 광 과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
자원봉사	내 무 부	지 방 행 정 국	내 무 국	사회진흥과	-	-
청소년문화	문화체육부	청 소 년 정 책 실	가정복지국	청 소 년 과	시 민 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사 회 복 지 정 책 실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시 민 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보건복지부	사 회 복 지 정 책 실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시 민 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송파구²⁾

자료: 서울특별시, 1995. '95 서울시정.

송파구, 1995. 구정백서.

년 여가행정인 점과 구민회관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가 체육활동보다는 문화활동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조직 자체가 여가의 일부영역인 사회체육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III. 외국의 여가정책

여가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여가정책 또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가선진국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본 후,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여가정책에 시사받을 특징적인 내용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1. 프랑스

노동운동의 발달로 인하여 1936년부터 유급휴가제

를 실시한 프랑스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증가한 여가를 어떻게 국민교육과 문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유급휴가제를 규정한 '상공업·자유업·가정업 및 농업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 이 법이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과, 여가가 인간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Dumazedier, 1962).

프랑스정부가 여가의 권리를 노동, 교육의 권리 다음으로 인식할 만큼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가져온 큰 관심의 표현은 1981년 미테랑 정권의 수립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실시해 오던 여가에 관한 행정을 일원적으로 하기 위해 '청소년·스포츠·여가성'을 개편하여 '자유시간성'을 설치한 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시라크 내각의 발족에 따라 '자유시간성'이 폐지되고 여가에 관한 행정이 '산업성'과 '정보통신성'을 통합한 '산업·우정·관광성' 속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변경의 이유로는 여가라는 활동 자체가 갖는 내용상

2) 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구마다 조직구성이 다를 수 있으나 아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의 예로서 서울시 송파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구가 문화행정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는 편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점과 프랑스의 경우 이미 여가생활의 많은 부분이 점차 개인과 민간의 주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상황변화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36년 이후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며 각종 여가시설 건설을 조장해 왔고, 1960년 이후에는 '국립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여가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75년부터는 도시주민의 주거지 가까이에 '야외활동센터'와 같은 여가스포츠시설을 갖추는데 주력해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여가시설의 신설보다 기존 시설의 보수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집'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1981년부터는 연차유급휴가를 연4주간에서 5주간으로 확대하였다(守能信次, 1989).

프랑스의 경우 특이한 점은 정부가 일찍부터 국민의 여가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해오면서 국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는 점이다. 여가의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 속에서 향상되어 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프랑스 여가행정에서 찾을 수 있다.

2. 미국

미국의 여가정책은 19세기 후반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시작된 놀이터(Play Ground)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시기 미국은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특히 아동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비행청소년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놀이터 설치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Kraus, 1971).

이러한 배경을 가진 미국의 여가정책은 공원·레크리에이션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즉 공원정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여가에 참여하게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어 왔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여가정책은 하나

의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이질적 단체에 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모자이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가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없고, 여러 기구가 여가와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가정책과 관련하여 비교적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1962년에 설치된 내무성 산하의 '야외레크리에이션국'이다.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는데 '공원·레크리에이션국'에서 주민의 여가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박원임, 1991).

미국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고 있고, 가족과 관련해 본다면 부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면서 자녀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일본

일본 정부가 여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국민의 여가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에 비교하여 열악한 생활수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받으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여가에 대하여 최초의 관심을 나타낸 것은 1968년 국민생활심의회에서 '장래의 국민생활상 -20년의 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여가문제를 중요한 국민과제로 지적한 것에서 비롯된다. 1972년부터는 여가문제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되고, 경제기획청에 '여가개발실' (현재는 '여가생활문화실'), 통산성에 '여가개발산업실' (현재는 '여가개발실')이 설치되었으며, 통산성의 주선으로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가 설립된 것도 이 해이다(一番ヶ瀬子 외, 1994).

1973년 이후 일본정부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기본계획에서 여가를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오일쇼크와 저성장경제의 영향으로 여가정책이 약화되게 되었고,

다시 여가정책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이다. 현행의 경제계획인 생활대국5개년계획(1993-1997)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활대국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고, 1997년까지 연간총노동시간을 1800시간(주평균 약35시간)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생기는 자유시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정비를 위한 시책 추진, 생애학습의 추진, 문화의 진흥, 여가장기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의 촉진, 여가활동에 있어서 혼잡의 완화,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응한 시설 정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는 여가행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청을 비롯하여 총무청, 복해도개발청, 환경청, 오키나와청, 국토청,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등 15성청이 각 부처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여가행정을 수행해 가고 있다. 다만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의 '여가·생활문화실'이 각 부서의 여가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여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등 여가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지방행정기구로서는 홋카이도처럼 생활복지부 생활문화과에 여가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행정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이나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가행정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經濟企劃廳編, 1994).

일본의 경우 여가행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부서는 없지만, 여가행정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정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1973년에 중앙부서들간의 여가시책의 연계를 위하여 경제기획청 여가개발실을 사무국으로 하여 '여가행정에 관한 각 省廳 連絡회'가 발족되었는데 이 회의가 현재에는 '여가·생활문화행정관계 성청連絡회의'로 되어 있다. 같은 해에 지방공공단체의 여가행정 추진을 위하여 '都道府縣 여가행정담당과장회의'를 발족시켰는데 이 회의에서는 각 성청의 여가관련시책, 경제기획청의 정보, 각 도도부현의 여가관련시책 등에 관하여 의논한다. 1974년에는 지방자치체들의 여가행정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여가행정

연구협의회'가 발족하였다. 또한 여가행정이 다양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체 자체에서도 여가관련부서들이 '여가행정연락회의'를 갖는 경우도 볼 수 있다(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余假·生活文化室 編, 1994).

IV.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의 과제

여가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만족감을 얻어야 함과 동시에 각 개인의 여가활동참여가 개인 및 가족·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여가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목표아래 종합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가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치방가세의 여가생활의 주체화, 공유화, 사회화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一番ヶ瀬康子 外, 1994). 이때 주체화란 개인의 여가생활이 타인에게 지배되거나 타인을 모방하는 유행이나 여가산업 등에 수동적으로 이끌리지 않는 주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유화란 일부의 계급이나 집단이 여가를 독점하지 않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화, 공유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가시설 및 여가공간의 확보,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여가교육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가의 사회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한 과제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가기본법의 제정

모든 국민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가향유권을 명시하고, 여가행정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며, 여가시간확보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과 장기유급휴가의 실현에 필요한 법적 정비, 국가와 지방의 역할, 민간인력의 활용, 자연보호와 각종 여가시설의 정비 등 여가행정전반에 관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여가기본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법을 기초로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을 여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가행정기구의 강화·정비

효율적인 여가정책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가생활문제를 담당할 행정기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배경 및 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때 프랑스에서 설치했던 '자유시간성'과 같은 여가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의 설치는 무리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 적합하게 행정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강화의 방법으로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에 '여가생활과'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문화체육부에 '여가정책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부서의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체에서의 여가전담기구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체육과를 '여가생활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가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가업무담당 기구들간의 조정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3) 여가연구기관의 설치

여가생활문제를 전담할 행정기구와는 별도로 여가에 관한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의 '여가개발센터'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거나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기존기관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개편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정책심의회'와 별도로 '여가정책 심의회'를 신설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여가시간의 증대와 자율적 배분

여가정책이란 국민이 가진 여가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전제가 되는 여가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자체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여가정책의 시작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가시간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1995년의 전국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47.7시간이고(노동부, 1996), 1994년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 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홍콩, 대만,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길다(조선일보, 1996.3.20). 특히 대도시 취업자의 경우 일평균 10시간이상 노동을 하며(이기영 외 3인, 1994) 장시간의 교통시간까지 소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정비하는 등 여가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이 가족원간 분담되지 않고 사회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휴식 및 자아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여가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기영 외 3인, 1994)을 고려하면 여가시간의 증대는 취업노동시간의 단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법정노동시간을 축소해나가는 한편 남성 및 자녀의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증진시키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또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법정일수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함으로써 여가생활이 주체적으로 되고 여가시설 및 설비, 교통수단의 혼잡화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동반의 휴가여행이 여름에 집중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시기에 직장의 휴가 및 학교의 방학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교를 기념하는 휴교일을 주말과 연계시킨다거나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로 학교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일한 노동시간내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변적(flexible) 근무시간제도 여가의 주체적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여가공간의 확대·정비

여가생활에 있어서의 주체성은 참여가능한 다양한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할 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가공간, 여가시설 및 설비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1960년대 이후 경제제일주의에 밀려 여가생활은 소비적 분야로 경시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정책결정자는 ‘국민생활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서 국민의 여가향유권을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여가욕구에 대응한 여가환경을 공공재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여가공간 및 시설에 대한 수요는 주거지에서의 근접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신화경, 1995), 공동주택의 건축시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여가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공유의 여가공간 확보를 권고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여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여가시설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시설은 이용요금이 일반적으로 고가이므로 여가생활에 있어서 계층차이를 적게 하고 여가향유의 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여가시설의 확대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집단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공급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정책의 방향이 집단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여가정책으로 나타내면 오히려 집단간 여가향유기회를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문화시설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여가시설의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 구민회관,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종합복지관 등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일부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인, 청소년, 취업여성, 장애인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시간 및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주

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취미·건강·가정생활 교육 강좌 등 상업적 문화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모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대상인 도시기혼여성의 아노미를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데는 사회단체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장상희, 1988: 김의숙 외 7인, 1995)을 고려한다면 사회참여활동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국립공원과 공공여가시설도 점차 유료화되어가는 추세인데 이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적과는 유리된 것이며 반복지적성격을 띤 여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모, 1990). 따라서 여가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취약집단을 위한 우선적 배려가 요구된다.

(7) 여가산업의 육성과 규제

여가생활이란 다양한 측면을 갖는 특성이 있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가생활의 탈표준화, 개성화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산업이 국민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산업의 기본적 목적이 이윤의 추구에 있다고 할 때 국민의 여가욕구가 주로 여가산업에 의하여 충족되는 환경이 되면 여가생활의 상업화, 과소비화, 향락화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더구나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성만 있으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저질의 오락물도 생산될 수 있으며,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재화도 시장성이 없으면 공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가산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를 통하여 여가환경을 정화시켜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체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보다 지역주민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여가산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8) 여가교육 및 정보제공

오늘날 불건전한 여가생활로 야기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기인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여가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소비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정보는 대중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가행동을 평가하고 주체적인 여가생활설계를 도우며 문화감수성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어느 곳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여가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조의 전반적 변화와 생활주기별 변화에 대응한 여가의식 및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일련의 연구(김외숙, 1978)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경우 유교적인 관습 및 여가의식의 미성숙,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진 가사노동부담, 긴 노동시간과 학업시간 등으로 인하여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여가생활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서의 여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의식과 기능을 교육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여가교육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제도, 모임과 이벤트 등 여가활동기회, 여가시설이나 조직, 여가지도자, 여가활동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개인 및 집단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하는 것도 여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9) 여가전문가의 양성

국민이 증가된 여가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건설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여가생활의 충실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지역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집단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에 의하여 주민의 여가생활이 보다 유익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문화축매요원 등이 여가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여가생활전반에 걸친 시책수립과 관리, 여가생활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근 전문대학에 여가관련학과의 개설되고 있는 추세와³⁾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가생활개발사', '여가생활상담원' 등과 같은 여가지도자를 육성하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문화적·정신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요구가 어느 시대보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불건전한 여가생활로 인한 사회문제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생활의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개인 및 가족, 사회, 국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여가기본법의 제정, 여가행정기구의 강화·정비, 여가연구기관의 설치, 여가시간의 증대와 자율적 배분, 여가공간의 확대·정비, 집단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공급, 여가산업의 육성과 규제, 여가교육 및 정보제공, 여가전문가의 양

3) 1994년 이후 주성전문대학의 '여가생활학과', 상지전문대학의 '여가시설관리학과', 제주관광전문대학의 '관광레저스포츠' 등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여가관련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다.

성을 제안하였다.

여가정책은 여가생활이 다른 많은 생활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 체육정책, 관광정책, 문화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여가향유권의 신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다. 국민의 여가생활이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서 중시되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활발한 여가정책과 함께 여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일반의 성숙된 여가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생활의 특성이 다른 어느 영역의 생활에서보다 개성과 자유가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민간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여가문화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권미화·이기준. 1995. “미혼 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20: 1-10.
- 2) 김문겸. 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 3) 김외숙. 1978. “가족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3: 49-68.
- 4) ———. 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김외숙·이기영·최은숙. 1996.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6) 김외숙·임혜경·임정빈·이기영·이연숙·조재순·고성혜·송혜림. 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29-142.

- 7) 김영모. 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8) 노동부. 1996. 「노동통계연감」 1995.
- 9)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1996.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 자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
- 10) 박원임. 1991. “여가, 레크리에이션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 8: 27-35.
- 11) 변화순. 1995.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여성연구」 48: 71-92.
- 12) 서울특별시. 1995. 「'95 서울시정」.
- 13)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 1990.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 14) 송파구. 1995. 「구정백서」.
- 15) 신화경. 1995. “조기출퇴근제 직장인과 부인의 여가행태 및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17) 이연숙. 1995.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의 미래주택 개발방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삼성건설(주) 공동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18) 장상희. 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66-89.
- 19) 최장호·정우식. 1993. “서울시 생활체육과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22개 구청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 10: 104-111.
- 2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한국의 문화정책」.
- 21)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여성·아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22) 經濟企劃廳 編. 1994. 「國民生活白書·平成5年版」.
- 23)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余假·生活文化室 編. 1994. “余假時代まちづくりハンドブック.” REC 1994 増刊11號 No.411 「'94年版 余假生活關聯資

- 料集」: 284.
- 24) 閣議報告. 1993.12.18. “‘生活大國5カ年計劃-地球社會との共存をめざして-’の推進狀況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 REC 1994 増刊11號 No. 411 「‘94年版 余假生活關聯資 料集」: 254-256.
- 25) レジャー・レクリエーション研究所 資料編. 1989. “政府・與黨・野黨の余假政策.” *Leisure & Recreation* 5: 23-27.
- 26) 余假開發センター. 1989. 「國際余假狀況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 27) ———. 1989. 「レジャー-白書‘89: 完全週休2日時代のレジャー」.
- 28) 一番ヶ瀬康子. 藺田碩哉. 牧野暢男. 1994. 余假生活論. 東京: 有斐閣.
- 29) 守能信次. 1989. “フランスの余假法制の發達史.” *Leisure & Recreation* 5: 49-53.
- 30) Braham, P. & I.P. Henry. 1985. “Political ideology and leisu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Leisure Studies* 4: 1-19.
- 31) Cross, G. 1993. *Time and Money: The Making of Consumer Culture*. London: Routledge.
- 32) Dumazedier, J. 1962. *Toward a society of Leisure*. Translated by S.E.McGiure. 1967. New York: John Wiley & Sons.
- 33) Hantrais, L. 1982. “Leisur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France”. *Leisure Studies* 1: 81-94.
- 34) ———. 1984. “Leisure policy in France”. *Leisure Studies* 3: 129-146.
- 35) Hultsman, J. 1995. “Spelling leisure”. *Leisure Studies* 14(2): 87-101.
- 36) Kraus. 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 Appeton.
- 37) Richards, G. 1995. “Politics of national tourism policy in Britain.” *Leisure Studies* 14(3): 153-173.